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합5631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1. A
2. B
3. 주식회사 C
4. D 주식회사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문병호, 변원갑

피고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주식회사 E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2. 체결된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제5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20. 5.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E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4. F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5. 피고 D 주식회사는 F에게 별지 목록 제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시원 김포등기소 2020. 4. 1. 접수 제386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8. 1. 25.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E가 G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252,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금액을 201,6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1. 25.부터 2019. 1.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의 대표이사인 F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의한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E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G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25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은 2019. 1. 24. 보증금액이 185,600,000원, 보증기한이 2020. 1. 23.까지로 변경되었고, 2020. 1. 14. 보증기한이 2021. 1. 22.까지로 변경되었다.2) 원고는 2018. 6. 7. E와 사이에, E가 H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57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원금을 456,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6. 7.부터 2019. 6. 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은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의한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E는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H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5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매년 변경되었고, 2019. 11. 27. 보증금액이 433,200,000원, 보증기한이 2020. 12. 4.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8. 8. 16. E와 사이에, E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40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원금을 34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9. 10.부터 2019. 9. 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은 2019. 9. 3. 보증기한이 2020. 9. 9.까지로 변경되었다.4) 원고는 2019. 9. 3. E와 사이에, E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카드 50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원금을 475,000,000원, 보증채무최고액을 617,5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9. 3.부터 2020. 9. 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카드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E는 2020. 5. 13.경 당좌거래정지, 2020. 5. 14.경 당좌부도, 2020. 5. 18. 업체부도 등 보증부실사유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0. 6. 29.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의 연체 대출원리금 187,318,955원을 G은행에 대위변제하고, 2020. 6. 17.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의 연체 대출원리금 436,872,139원을 H은행에 대위변제하고, 2020. 6. 17.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의 연체 대출원리금 341,321,290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고, 2020. 6. 17.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의 연체 대출원리금 472,283,240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합계 1,437,795,624원이다.

3) 원고가 E로부터 9,305,15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1,428,490,474원이고,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2,038원이며,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은 2,678,988원이다.

다. E와 F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 A는 2020. 5. 13.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5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5. 13. 접수 제4155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는 2020. 5. 22.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445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3) 피고 A는 2020. 5. 22. E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445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4) 피고 B는 2020. 5. 22. E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445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20. 5. 22. E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8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445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6)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2020. 3. 31. E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6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4. 1. 접수 제386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20. 5. 13.경과 이 사건 제2 내지 4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20. 5. 22.경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4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는 2020년경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태였고, E가 발행한 어음이 2020. 5. 12.경 지급거절로 부도가 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그 후 2020. 5. 13.경부터 E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2020. 6.경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4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1 내지 4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E의 무자력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 I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는 2020. 5. 22. 이전에 이미 4,839,989,437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E가 소유한 부동산(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 포함) 및 기계기구의 2020. 8. 4. 기준 감정가액은 2,004,788,92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4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 체결 당시 E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E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 B, C와 이 사건 제1 내지 4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E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2020. 5. 13.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제2 내지 4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은 그로부터 불과 9일이 지난 2020. 5. 22. 체결된 점을 감안하면, E에게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한다는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A, B,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A, B, C는, 피고 C가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E에 닥트공사 등을 제공하고 E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아 이에 배서하여 할인을 받았는데, 위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어음배서인인 피고 C가 어음소지인들에게 어음금 968,176,000원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 C는 대표이사 J의 배우자인 피고 A로부터 A가 부동산을 처분한 돈 중 1,023,4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어음금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고 C가 E에 대하여 갖는 어음금채권 중 일부를 피고 A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C가 피고 C의 직원 피고 B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시 E에게 대여하면서, 피고 C가 E에게 갖는 대여금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E에 대한 채권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E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을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E가 2020. 1. 7.경부터 2020. 4. 24.경까지 피고 C에 발행해 준 어음 22장(합계 액면금 968,176,000원)이 2020. 5. 12.경 지급거절로 부도된 사실, ② E와 피고 C, A는 2020. 5. 12. 피고 A의 사비용으로 위 어음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되, 피고 C의 E에 대한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고, 피고 A는 E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J과 피고 A가 2020. 5. 19. 그들 소유의 아파트를 1,60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④ 피고 A가 피고 C에게 2020. 5. 18.부터 2020. 8. 25.까지 합계 1,023,400,000원을 이체한 사실, ⑤ 피고 B는 2020. 1. 20.부터 2020. 2. 12.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합계 124,364,000원을 이체하고, 피고 C는 2020. 3. 9.부터 2020. 3. 11.까지 사이에 E에게 합계 148,200,000원을 이체한 사실, ⑥ 피고 C와 피고 B 및 E는 2020. 5. 22. 피고 C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E는 그 담보를 위해 E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피고 C와 피고 A는 이 사건 제1, 2, 4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신규 자금을 대여한 듯이 주장하지만, 그 실질은 이미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공사대금채권 내지 어음금채권에 대하여 2020. 5.경에 물적담보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피고 C가 자신의 E에 대한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고도 피고 A에 중복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 C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 B이 피고 C에게 124,364,000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바, 피고 C와 피고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점, ④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4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 체결 당시 E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채권자 K의 청구금액 212,000,000원의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2 내지 4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채권자 L단체의 청구금액 174,500,000원의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내지 4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20.

3. 31.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E는 2020년경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태였고,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3. 31.로부터 불과 약 43일 후인 2020. 5. 13.경부터 E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20. 6경 피고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그 연대보증인인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F의 무자력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 I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F은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3. 31. 당시 이미 2,915,274,73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F이 소유한 이 사건 제6부동산의 2020. 8. 31. 기준 감정가액은 647,000,000원이고, 그 외에 강화군 M 토지지분의 시가는 78,650원(2020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남원시 N콘도미니엄 지분의 시가는 280,000원 상당으로 F의 적극재산은 합계 647,358,65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F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F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와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6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E의 대표이사로 E의 경영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E는 2020년 상반기에 매출이 급감한 상태였고,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 3. 31.로부터 불과 약 43일 후에 E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F에게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한다는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D는, F은 2013년경 O으로부터 E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O의 동생 P이 2016. 1.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을 부도내고 도피하여 피고 D가 Q로부터 50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 D는 P의 형 O이 운영하였던 E와의 거래도 단절하려 하자, E가 이를 막기 위해 Q의 미수금 채무 중 20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여 피고 D와의 거래를 유지하는 대신 피고 D로부터 일부 물품을 5% 정도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았고, 2018. 6. 1. F 개인도 E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제6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제6부동산의 담보여력이 얼마 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을 유보하고 있던 중 2020년경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하자 2020. 3. 3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2018. 6. 1. 이미 이 사건 제6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D는 2018. 6. 1. 당시 E와 F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가 Q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 D가 Q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F이 2013년경 O으로부터 E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16년경에는 O과는 무관한 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 나아가 F 개인까지 O의 동생 P이 운영하던 업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D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E와 F이 Q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6. 1.자 F의 연대보증각서(을나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제6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제6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 D의 근저당권이 2020. 3.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일자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나 제5호증)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계약이 2018. 6. 1.경 이미 체결되었다거나 그 때 이미 이 사건 제6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 D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상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는 F에게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0. 4. 1. 접수 제386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석, 판사 최석진, 판사 조아람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광주시 공장용지 990㎡

2. 위 지상

[도로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2층 공장

1층 336.60㎡

2층 336.60㎡

내역 1층 공장2층 창고 및 사무실

시멘트블록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3.77㎡

3. 경기도 광주시 공장용지 948㎡

4. 위 지상

[도로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철골조 철골트러스지붕 단층공장 1층 399.76㎡

5. 경기도 광주시 전 241㎡

6.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제 동[도로명주소 : 경기도 김포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33.3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김포시 대 74804㎡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74804분의 76.5049

